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12. 1 선고 2021나510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12. 1 선고 2021나51007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0가합1298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류성용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윤정은, 이승연

변론종결 2021. 11. 3.

판결선고 2021. 12. 1.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0가합1298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와 2005. 11. 16. 접수 제857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8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4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끝행부터 4면 2행까지의 “그 무렵부터 사망하기 … 감각실어증을 진단받았는데”를 “2004. 8.경 퇴원하였고, 이후 통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인 2005. 10. 20.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고 2005. 11. 3. 퇴원한 점, ② C의 진료기록(갑 제2호증)에는 ‘2004 전반적 실어증, 2005 감각실어증’이 기재되어 있는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면 11행의 거시증거에 ‘갑 제11, 13호증, 을 제4, 13, 1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면 아래에서 4~7행을 아래 『』와 같이 고쳐 쓴다.

『① C은 2004. 6. 30.경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전까지는 건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2004. 8.경 퇴원한 이후 집에서 배우자인 F, 며느리인 피고, 손자인 G(피고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통원치료를 받았다. C이 2005. 1. 29.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는데,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제13호증)에서는 ‘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 · 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앉기, 서기, 걷기 등의 이동능력과 일상생활 활동(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 · 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정신 지체에 준한 지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장애등급 1급1호는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주의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2급1호의 ’가’와 ’나’의 증상이 동시에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2급1호 ’가’의 증상은 ‘평지에서 5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사람, 고르지 못한 바닥이나 언덕길을 걷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람 또는 손잡이를 잡고도 계단오르내리기가 겨우 가능한 사람’이고, 2급1호 ’나’의 증상은 ‘식사, 세면 및 양치질, 용변처리 등을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으나 목욕, 물이 들어 있는 컵을 손으로 흘리지 아니하고 옮기는 일 또는 선반에 물건을 올리는 일 등은 거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뇌병변 장애 1급’의 장애등급결정은 신체적인 활동능력을 기초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한 판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C이 2005. 10. 20. 호흡곤란으로 입원할 당시의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지남력이 모두 ‘있음’으로 체크되어 있다. 진료기록에 2005. 10. 24.경까지는 의식수준이 기면상태에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간호일지에는 2005. 11. 1. ‘혼자서 앉았다 누웠다하며 체위변경(change position)을 하였고, 의식이 명료하다(mental alert함).’는 기재가 있고, 2005. 11. 2.에도 의식이 명료하다는 기재가 있다. C은 2005. 11. 3. 퇴원한 후 2005. 11. 8.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은 2005. 11. 3. 건강상태와 의식수준을 상당히 회복한 상태에서 퇴원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증여(2005. 11. 9.)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2005. 11. 16.) 당시까지 C의 건강상태나 의식수준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C의 아들 H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4호증)에는 ‘2005. 10. 초췌한 식사도 거의 하시지 못하였으며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만 계셨습니다. 상태가 더욱 위독해지시면서 물 한 방울도 넘기기 힘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그렇게 2005. 11. 24. 22:00경 가족의 곁을 떠나셨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배우자인 I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5호증)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위 간호일지의 내용 등 앞서 본 사정들과 배치되어 위 각 진술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제1심판결 4면 아래에서 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아래에서 2행의 “산경학적”을 “신경학적”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3행의 “현재까지”를 “C의 사망시까지”로 고치고, 5면 4행의 “40여년간을”을

“24여년간을”로 고치며, 5면 8행 끝에 “C의 상속인 중 한 명인 위 F는 C의 사망 후로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F는 뇌경색증과 치매 등으로 2018. 4. 11.부터 입원치료 중에 있는데, C의 사망 이전부터 위 입원 당시까지 피고와 함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서 함께 살았다. H의 진술서(갑 제4호증)에도 ‘어머니(F)가 아버지(C)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았다. (C의 사망 후)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일부 토지를 팔려고 형제들의 동의를 구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F는 거주지 부동산이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사실 및 그 경위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F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기 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원익선, 판사 권노을, 판사 김지건

별지